

제25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6.11.)

조례안,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 | | |
|---|--|----|
| 1 | 거창군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 2 | 거창군 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 3 |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
| 4 |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1 |

거창군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5. 3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사용의 예약, 취소시 반환근거 등을 마련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예약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산림휴양관·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별표 3)
- 다.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라.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위탁운영을 신설함(안 제8조)
- 바.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명확히 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6.~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향노화 힐링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시설사용에 편의(감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취소, 환불 등과 입장 및 시설사용제한, 위탁운영, 체험료 등 전반적인 시설사용에 대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별표 3]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 감면대상 | 감면율 | 기준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퍼센트 | |
|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 | |
|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 30퍼센트 | |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5. 3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신설(안 제7조제6항)
 - 1)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 부과(안 제7조의2)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안 제12조의2)
- 라.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3)
 - 1) 삭제: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 2) 신설: 75리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3.~5. 24.

나) 예고결과: 의견 1건(일부 반영),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규격을 폐기물 배출시 무게상한 규정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신설을 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고,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략.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5.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안 제6조제2항, 제10조)
- 다.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1항·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 라. 법령 중복·재기재 정비(안 제12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5. 12.~5.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상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 정비와 법령·중복 재기재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5.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북상면 월성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개요

- 사업명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자 : 달빛고운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종인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11월(6개월간)
- 발전용량 : 18.06kw
- 사업비 : 38,700천원(군 34,830, 자부담 3,870)
- 연간수익 : 4,500~5,000천원 정도

나. 추진사항

- 2021. 05. :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추진 중

다. 재산의 표시

| 위치 | 면적 (m ²) | 설치 (m ²) | 설치용량 (kW) | 사용허가신청자 | 비고 |
|---------------------------------------|-------------------------|-------------------------|--------------|--------------------------|----|
| 북상면 월성리 1084-4 (자연체험학습 관 옥상) | 4,956 | 86 | 18.06 | 달빛고운영농조 합법인 대표 정종인 | |

라. 향후 추진 계획

- 2021. 6.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 예치
- 2021. 6. ~ 7. : 전기발전사업 허가(경제교통과)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4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4-4(지목 : 대지)



현장사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북상면 월성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

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
하고 있으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
받은 재산관리관은 관련 법령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
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은 관련법규에 근거한 조건완비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용수익·허가는
동의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